

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19.5.10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, 교원위원의 경우 유치원장, 원감 중 1인이상, 동료교사 2인으로 구성한다.
- ③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유치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교원이 아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위촉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유치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가. 소속 교원에 대한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
 - 나. 소속 교원에 대한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, 평가내용·방법·절차·시기
 - 다.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
 - 라. 평가 종류별, 평가 대상자별, 평가 영역별 평가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
 - 마.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
 - 바.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원자료 열람요청에 관한 사항
 - 아.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및 맞춤형 연수 대상자 선정·추천에 관한 사항
 - 자.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보고서
 - 차. 기타 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- 가.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유치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
 - 나.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유치원 구성원의 지원 요구 수렴
 - 다. 기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

제5조(서약서 작성)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의)

-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회의는 유치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규정의 개정) 동 규정은 개정사유 발생시 유치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9.05.10.부터 시행한다.

유치원교원 인사 자문위원회 규정

수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

제1조(명칭)

본 위원회는 ‘수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원인사 자문위원회’로 칭한다.(이하 ‘위원회’라 칭함)

제2조(목적)

교원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

①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.

- 가.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
- 나. 부장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
- 다. 방과후 과정반 담당교사 배정에 관한 사항
- 라. 업무분장 조직에 관한 사항
- 마. 연수, 상벌, 파견, 훈.포장에 관한 사항
- 바.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(전보, 승진)

제4조(조직)

- ① 위원회는 원감과 보직교사 1명, 학급담임 교사 1명을 포함한 총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감으로 한다.
- ②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급담임교사 1인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 위원장(원감)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.
- ④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교무기획부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

-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가.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
 - 나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다. 인사위원 1/3 이상이 요구할 때
- ② 회의 및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의 자문 사항에 대하여 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되 이의가 있을 시 원장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 운영 규정과 인사규칙의 재.개정은 교원전체 회의에서 협의.결정한 후 원장이 공포한다.

제6조(학급담임 배정)

- ① 학급담임은 교사가 제출한 희망서에 의하여 배정한다.
- ② 학급담임 배정 시 경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를 우선 배정 할 수 있다.
 - 가. 보직교사가 보직을 포기한 경우
 - 나. 유치원 행정의 특수성에 따라 교무(연구시범유치원 지정 시) 부장의 경우
 - 다. 전년도에 방과후 과정반을 담당한 교사
 - 라. 지정유치원 지정 수업을 한 교사, 위원회에서 뚜렷한 공이 있다고 인정한 교사
 - 마. 원로교사(당해년도 3월 1일 현재 만5세 이상)는 본유치원 1년 이상 재직 시 우대
- ③ 학급 경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.
 - 가. 본원 근무 다경력 순
 - 나.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순

제7조 (보직교사 임용)

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의한 규정 및 경기도공립학교 보직교사 명칭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
- ① 보직교사의 종류 : 교무기획부장
- ② 부장교사 임용 시 예정 직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.
 - 가. 유1정 소지 자격자
 - 나.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공로로 표창을 받은 자
 - 다.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각종 경기 및 전시회, 연구발표 대회에서 입상 한 실적이 있는 자
 - 라.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업무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③ 보직교사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.
 - 가. ②항의 우선 임용대상자.
 - 나. 유1정 소지 자격자 중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
 - 다.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순
 - 라. 위 조항이 동일한 조건의 경우 3배수를 선정 원장이 순위를 결정 한다.
- ④ 부장교사의 해면은 본인의 원에 의한다.
 -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부장교사 해면을 할 수 있다.
 - 가. 학급의 감축으로 정족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
 - 나. 휴직 징계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
 - 다.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,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교원의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
 - 라. 근무태도(복무실태)가 불량한 경우
 - 마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8조 (방과후반 담당교사 배정)

- ① 방과후 과정반 담당교사는 본인 희망에 의한다.
- ② 방과후 과정반 담당 배정 시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.
 - 가. 보직교사가 보직을 포기 한 경우
 - 나. 본원 다 경력 교사
 - 다.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이 배정 할 수 있다.

- ③ 방과후 과정반 담당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전입교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.
- ④ 전입교사가 발생하지 않고, 방과후 과정반 담당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본원에서 방과후 과정 경력이 없는 교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.
- ⑤ 재직교사 모두가 방과후 과정반을 담당하였고, 방과후 과정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교사 3인이 순위를 작성하여 윤번제로 배정할 수 있다.

제9조 (업무 분장)

- ① 본인의 희망을 참조하여 과거의 업무 실적과 당해 업무 수행능력과 본인의 취미, 특기를 고려하여 관리자가 사무를 배정한다.
- ② 부장교사는 유치원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0조 (표창)

- ① 표창대상자 추천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되 해당 부분에 공적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된 교사를 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원장에게 복수 추천을 하고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.
 - 가.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가 여부
 - 나. 공적이 질적,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게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
 - 다. 포상으로 그 공적이 사회 또는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과 효과
 - 라. 훈격이 표창자의 신분 및 공적에 비교하여 합당한가 여부
 - 마. 유사한 내용의 타 공적자와 균형
 - 바.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
 - 사. 대상자의 신상과 환경에 대한 여론
 - 아. 표창이 조국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
 - 자. 기타사항(근무년수, 근무부서, 직무분야, 연령 등)
-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한다.
 - 가. 본원 장기 근무자 우선
 - 나. 경합 시 고 경력자 우선
 - 다. 본원에서 동일 등급의 수상경력자는 차 순위로 한다.
-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할 수 없다.
 - 가.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징계처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제11조 (학급감축으로 인한 전보내신)

학급감축으로 인하여 부득이 전보내신이 발생할 때 다음 각 호 순에 의하여 전보내신 한다.

- ① 희망자를 최우선으로 한다.
 - (단 희망자가 감축 학급을 초과할 때는 다음 각 호 순에 의하여 내신한다)
 - 가. 본원 장기 근무 교사
 - 나. 본원 근무경력 동일 시 생년월일이 빠른 교사
- ② 희망자가 없을 때는 다음 각 호 순서에 의하여 내신한다.
 - 본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
 - 가. 본원 경력이 적은 교사 순
 - 나. 총 경력이 낮은 교사 (동일한 조건인 경우 생년월일이 낮은 교사로 한다.)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칙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